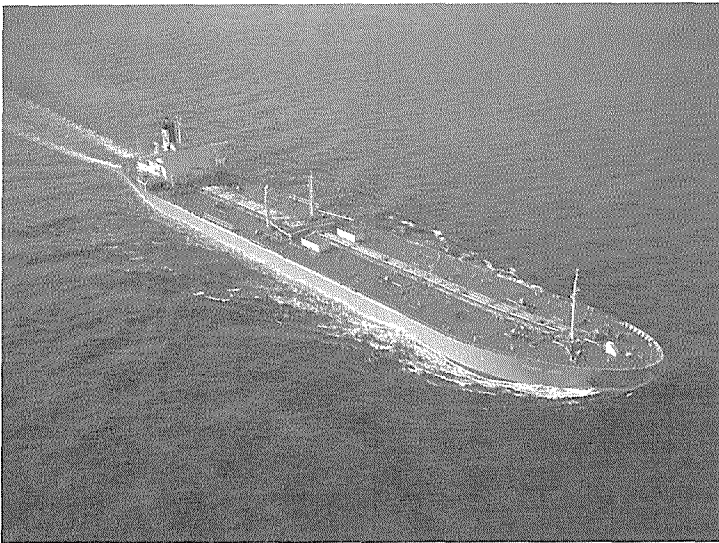


국제현물시장에서의 원유수입계약에 대한 포괄승인제 실시

- 동력자원부 -



동력자원부는 행정절차간소화 및 민간부문자율성제고 방안 등의 일환으로 국내정유사의 현물원유수입

등으로 저가의 원유구매가 있을 때 다음분기 할당물량중 약 20% 정도는 앞당겨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부문자율

시 계약별 매건마다 개별적으로 승인하던 것을 분기(3개월) 단위의 일정물량을 포괄적으로 승인하는 포괄승인제도를 도입, 금년 4/4 분기부터 실시키로 했다.

동자부는 이 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정유사가 포괄승인을 받은 물량 중 당해분기 이내에 수입하지 못한 물량은 다음 분기로 이월하여 수입할 수 있고, 또한 계절적수요증가 또는 국제원유시황의 변

성제고를 통하여 국내원유의 원활한 수급을 기하고자 하였다고 밝혔다.

이 제도실시로 분기별(3개월간) 종전 약 100여건의 현물원유수입승인이 5건으로 대폭 감소됨으로써 민원간소화의 획기적 제도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유수입계약에 대한 포괄승인지침은 다음과 같다.

□동력자원부 고시(제92-48호)□

국제현물시장에서의 원유수입계약에 대한 포괄승인지침

석유사업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국제현물시장에서의 원유수입 계약에 대한 포괄승인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92년 8월 8일
동력자원부장관

다 음

제 1 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국제현물시장에서의 원유수입계약에 대한 포괄승인의 물량범위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승인대상) 포괄승인대상은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계약 중 국제현물시장에서의 원유수입계약에 한한다. 단, 공업원료용 나프타를 대체하는 중질 엔·지·엘의 수입계약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 3 조(물량범위) ①포괄승인 물량은 정유사별·분기별로 아래의 산출식에 의거 산출한 범위(이하 "허용물량범위"라 한다)내로 한다.

· 산출식 : 당해년도 동력자원부 석유수급계획상 총 원유수입량×전년도 정유사별 내수시장 점유율×
(100-승인시의 장기계약비율)/100×1/4

단, 현물도입비율은 40% 이내이어야 함.

②제1항의 "내수시장 점유율"중 "내수"라 함은 직수출을 제외한 총판매량을 말한다.

③포괄승인을 받은 물량중 당해분기내에 수입하지 못한 나머지 물량은 다음분기에 이월할 수 있다. 또한 계절적수요증가 또는 국제원유시황변동 등으로 당해분기내의 포괄승인물량을 초과하여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분기 포괄승인물량의 20% 한도내에서 다음분기물량을 앞당겨 수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분기 허용물량범위에서 이를 차감한다.

④당해년도 1/4 분기의 허용물량범위를 제1항의 산출식에 의하여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4/4 분기의 허용물량 범위를 잠정적으로 준용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괄승인물량 이외의 현물시장 원유수입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개별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다.

1. 장기계약 체결분 중 공급자의 사정으로 계약물량의 도입이 감축되어 소요원유의 대체수입이 불가피한 경우
2. 장기계약의 신규체결 또는 기존장기계약을 갱신하기 위하여 협의 중인 경우(1회에 한함)
3. 신규도입유종에 대한 시험용 원유로서 1척분에 해당하는 물량을 수입하는 경우
4. 장기계약물량 중 공급자의 양해하에 계약물량의 일부를 현물로 대체하여 수입하는 경우
5. 국제석유시황변화등을 감안 국내석유수급상 또는 국민경제운용상 동력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4 조(승인방법) ①포괄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매분기 개시 1개월전까지 제3조의 허용물량범위 내에서 소요물량을 산정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동력자원부장관은 승인신청물량을 심사하여 포괄승인할 경우 이를 대한석유회사에 통보한다.

제 5 조(수입추천 및 보고) 대한석유회사회장은 포괄승인을 받은 물량에 대한 개별적인 수입추천시 가격등 수입조건에 관한 자료를 징구하여 비치하고 추천서 1부를 동력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조(수수료) 포괄승인을 신청할 때 1만원의 대한민정부수입인지를 별지 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